

대한민국

개요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정부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태도는 종전과 비교하여 개선 혹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없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종교계 지도자와 관계자를 만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협의했다.

I. 종교 인구 분포

최근에 실시된 인구 센서스 자료(2005년)에 의하면, 주요 종교의 신자 비율은 대략적으로 불교 23%, 개신교 18%, 가톨릭 11%로 조사됐으며 47%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통일교,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다.

II. 정부의 종교의 자유 보장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특정 종교에 국한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30세 사이에 속하는 사실상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복무기간은 병과(兵科)에 따라 24~27개월이다. 조사대상기간 중에 군 복무기간이 21~24개월로 축소됐다. 하지만 법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거부한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및 예비군 복무 의무가 면제되며 추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불교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었으며, 사찰은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

정부는 종교단체나 외국인 종교 관계자의 허가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과 같은 종교 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정부 관행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 혹은 구금된 경우를 포함,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Watchtower International)은 조사대상기간 말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약 761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평균 18개월을 복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0년 말 현재 복역 중인 신도의 수는 약 903명이었다. 조사대상기간의 경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1월에 846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6월에는 732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가 400~500명 선이던 2009년과 비교하여 급증한 것이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고 복역 시기를 미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말에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결정이 발표된 이후로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의 수가 급증했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조사대상기간 말을 기준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양심적 병역 거부 건수는 155건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접수된 건수는 15건이며 그 중 2건이 예비군에 관한 건이라고 보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조사대상기간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관련 병역법 조항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제대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비군 의무복무기간은 8년이며 예비군 훈련은 연간 수회에 걸쳐 실시된다. 벌금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 위반 시 평균 20만원(1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 번 위반 시에는 매년

10만~30만원(83~249달러)씩 증액된다. 법정 벌금 상한선은 위반 건당 200만원(1,660달러)이다. 법원은 상습적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워치타워인터내셔널은 1990년 이후 법원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20명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60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유력한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들을 취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있다. 일례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종교단체들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우호적인 시각에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IV. 미국 정부 정책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종교계 지도자와 관계자를 만나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안들을 협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해 증진 차원에서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지 이슬람 공동체와도 만남을 가졌다.

조사대상기간 중에 대사관 당직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측 대표들을 만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감 문제를 협의했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도 접촉했다.